

# 대출 약정서 (회사용)

사업자등록번호 : / 대부업등록번호 :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 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 출 의뢰인		대 출 회 사	
성명		상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대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직업		계좌	
주소			

계약일자	년 월 일	만기일자	년 월 일
대부금액	금 원정(₩ )	부대비용 내용및금액	
<input type="checkbox"/> 신규계약 :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연장계약 : 잔존 채무잔액 <input type="checkbox"/> 추가대출계약 : 기 대출금액 + 채무자가 추가로 실제 수령한 금액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이자율	월 % 연 %	연체이자율	월 % 연 %
이자계산방법 예시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X 이용일 수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12) X 이용개월 수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입니다.			
분할상환일	매 월 ( )일 원금 ( )원		
이자율의세부내역			
대출금수령방식	<input type="checkbox"/> ( )은행 계좌 : 예금주 : <input type="checkbox"/> 현금 ( )원		

담보물품내역				
번호	물품명(모델명 / 일련번호 / 구성품)	구매처 / 소유경로	구매 / 소유시기	구입가격

기 타 약 정 사 항															
											본인확인, 수령코드 (물품 패스워드 및 패턴)		● ● ● ● ● ● ● ● ●		
계약담당자	담당자 : (인)						신분증확인	확 인			소유권 귀속 통보	확 인			
입고확인	부	주	대표	출금확인	부	주	대표	입금확인	부	주	대표	출고확인	부	주	대표
수령확인	년 월 일 물품을 이상없이 수령했습니다. 수령인 : (서명)														

변제방법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의거합니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상환일 기준 2년 이내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없 음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채무자(이하 "양도인"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양도인의 채권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계약해제권을 포함한 계약자로서 갖는 모든권리 이하 "대출채권"이라 함)를 채권자가 년 월 일 (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상기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인 및 양수인으로부터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에 제공되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단 양도한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과 채권자간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서에 의거 양도된 대출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고객명 : (인)

# 담보대출약관

본 담보대출 약정서는 착한 전담포(이하 "당사"로 표기)가 제공하는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기초로 당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제1 조 업무 정의

- 당사에서 취급하는 담보 대출 서비스는 물품, 유가증권(이하 "담보 물품"이라 한다.) 등 민법에 규정된 권권을 취득하여 당해 담보 물품으로 채권을 담보하고 고객에게 금전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항의 대출금액에 대해 고객이 채무변제기 전 또는 후까지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해 담보 물품으로 대출금의 변제(대물변제)가 진행되며, 진행 절차가 완료된 경우 고객의 담보 물품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 제2 조 대출 서비스 이용

- 대출금액은 당사가 담보 물품을 감정한 후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이 지정한 방식으로 계좌송금 및 일부/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대출이율은 대출금액 및 고객의 이용도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대출기간은 물품에 따라 7일에서 12개월이며 매달 지정된 날짜에 이자를 납부(이하 "연장"으로) 하면 되고 당사는 본 기준을 적용해 대출금 및 기간을 고지, 고객이 동의하면 자필 계약하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 각항의 요율, 기간, 금액, 등은 금융 사정 등의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판단하여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고지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통보로 같습니다.

## 제3 조 이자, 대출기한 연장 및 기한이익의 상실

- 이자의 입금 보류 및 기한 외 납입 시 고객 측 일방적, 임의, 단독 결정은 무효 처리되며 합의되지 않은 연장일 초과 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기한 연장 요청 시 미납금이 없는 경우, 당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 승낙되고 고객은 내방하여 계약서를 갱신해야 연장 가능합니다.
- 당사는 SMS로 연장, 상황, 기한이익의 상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서비스로 전송결과 여부는 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입금 혹은 고지한 금액이 아닌 임의대로 입금하는 경우 정상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당사로 입금 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계약 기한이 지나 절차대로 처리된 건은 당사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처리되지 않은 납부금액은 환불해 드립니다.)

## 제4 조 담보품의 반환

- 약정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 일부 상환 시 당사 요청 후 고지 된 금액을 납부하고 전액 상환 시 원하시는 기일을 예약하고 상환 후 내방하면 담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품은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되고 있어 고객이 수령할 예정일 하루 전 의사가 있어야 정상 후 수령이 가능하며, 법정공휴일 및 당사의 사정에 의한 임시 휴일 혹은 사전 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당사의 출장 기간에는 상환 및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당사는 담보 물품을 반환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지대한 계약자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고객 이외에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직접 킷, 타인 수령 요청 제외)

## 제5 조 유질물의 취득과 처분

1. 조 2항에 따라 채무변제기 전 또는 후까지 원금 및 이자 입금확인이 불가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품의 소유권은 당사로 귀속됩니다.  
상항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항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는 그 유질물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유예기간을 드리며 초과 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매각 또는 처분합니다.(단 유예기간은 상호 간 특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 대부거래표준약관 14조에 의거하여 본사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본사는 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6 조 증액(추가 대출)신청

계약 중 원금 일부 상환했거나 본 사가 제시한 대출금액보다 소액 대출 한 고객은 언제든지 요청 시 추가 대출(이하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원금 및 원리금 균등 상환 고객은 원금의 30% 이상을 변제하셨을 경우 증액 신청을 하면 당사가 검수 후 진행해 드립니다.

## 제7 조 유질물 처분 시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채무불이행시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해 처분을 진행하며 담보물의 감가 및 여러 사유로 인해 당사의 손해(원금, 이자, 수수료, 소송료 등 발생 비용)는 고객이 책임지고 배상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 제8 조 전담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조치

- 재해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담보 물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 당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재해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전담물건의 훼손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당사에 귀책 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훼손 또는 분실 시점의 중고 거래가에 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변형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담보대출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물품의 변색 및 변형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차후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 제9 조 장물, 가품에 대한 책임

고객이 담보 물품으로 제공한 물품이 당사의 감정 후의 경우라도 장물이거나 가품(HPTP 고압 처리 및 합성 다이아, 오일 처리 등)으로 판명되어 전담물건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대체할 담보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 제10 조 개인 정보 이용 및 보호

-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며, 당사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본 서비스에 관한 목적에만 이용됩니다.
- 해당 개인 정보를 법률에 정한 사항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와 당사의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11 조 약관 효력 발생

이 약관의 효력은 고객이 대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 3일 이내의 이의가 있을 시 의사 반영이 가능합니다.

## 제1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관해 고객과 당사 간에 이견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 영업점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처리됩니다.

## 제13 조 채무 증명서 발급과 처리 기한

채무자가 채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당사에서 정한 비용이 발생하며 기한은 발급 요청 접수 완료 후 영업 7일 이내로 합니다.

## 대물변제의 예약 확인서(정지조건부)

- ※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예약완결의 의사 없이 처분절차가 진행되므로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 607조) 담보물 처분후 원금 및 이자, 처분시 발생한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하며 기한이익의 상실후 채무자는 담보물에 대해선 권한이 없기에 처분금액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 ※ 법률 및 약정에 의거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할 때에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장물 또는 모조품 등)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80조)
- ※ 특약사항 :

대물변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_\_\_\_\_ (인)

1. 담보로 제공된 물품은 진(정상)품이고 대출진행 중 가품, 도난 / 분실로 확인 시 배상 및 형사처분을 감수합니다.

2. 담보 물품 속 개인 자료나 내용물(구성품, 데이터)의 관리는 본사의 책임이 없으며 전담 전 확인했습니다.

3. 담보 물품의 수령은 하루 전 요청 후 납부기준 다음날 영업시간부터 수령하는 것을 듣고 동의합니다.

4. 중도 상환 요청 시 물품 상환 절차와 상환금에 대한 안내받았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5. 약관 제5조에 의거한 소유권 귀속 후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았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5번의 특약을 설명 듣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6.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 표준 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수 령 함

7.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 표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 었 음

8. 중개 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 었 음

위 담보대출약관을 필독하였으며 약관 전체 내용에 동의합니다.

대출 신청인

(인)



# 대부거래 표준 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중(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관제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상경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대비용으로서 관제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채우는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전이자율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상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체재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액비율이 최소한도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비용)에 의한 연 6분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하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처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회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채무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총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총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총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총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변제총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사무를 대부업자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가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을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소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사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귀사와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 안 함

### ○ 개인(신용) 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금융)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 판단, 개인(신용) 정보 조회, 금융 사고조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수집/이용 개인(신용)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이용 고유식별 번호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동의서

귀사와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 안 함

### ○ 개인(신용) 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금융)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 판단, 개인(신용) 정보 조회, 금융 사고조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수집/이용 개인(신용)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이용 고유식별 번호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함
- ◆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고지할 예정임
- ◆ 신용 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서

귀사와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에 때 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 안 함

### ○ 개인(신용) 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 (1)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에 의한 신용 정보집중기관 같은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이용목적 : 신용 정보의 집중 관리 및 활용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 대상 개인(신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 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 내용)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2)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 : 신용 정보의 제공/이용기관, 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이용목적 :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제공대상개인(신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 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 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